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새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1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3일
발 의 자: 이새날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로 7017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나. 시장의 책무로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서울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서 도로교통법 에 의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을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으로, “보행환경을 조성”을 “보행권을 보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를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 2.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내려서 끌고가는 경우 제외)
 - 3. 그 밖에 유아차,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 로봇 이외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통행
- ③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서울로 보행자전용길</u> ”이란 <u>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u>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u> ----- <u>보행권을 보장-----</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생략) ② 누구든지 <u>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u> 2. <u>관리차량, 유아차, 휠체어 이</u>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u> <u>서 -----</u> ----- -----. 1. <u>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u> 2. <u>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u>

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신 설〉

〈신 설〉

제13조(행정지도) 시장은 제13조
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통행(내려서 끌고가는 경우 제
외)

3. 그 밖에 유아차, 휠체어,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
기, 실외이동로봇 이외의 동력
(動力)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통
행

③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
한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관
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도) ---- 제12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로 7017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